

화장품에 관한 학술 자료 평가, 시험·분석, 시설 검사 또는 제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전문가, 전문가 조직,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최대 등록 수수료에 관한

보건부 공고

불기 2568년(서기 2025년)

불기 2565년(서기 2022년) 화장품법(제2호)로 개정된 불기 2558년(서기 2015년) 화장품법의 제5조 첫번째 단락 및 제6조 제12의1항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, 보건부 장관은 2024년 3월 21일 개최된 화장품위원회 제2/2024차 회의의 권고와 2025년 1월 21일 내각의 승인을 거쳐,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제1조 본 공고는 관보에 공표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중앙 및 지방의 모든 화장품 심사 절차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, 화장품에 관한 학술 자료 평가, 시험·분석, 시설 검사 또는 제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전문가, 전문가 조직,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최대 등록 수수료를 본 공고에 첨부된 목록과 같이 정한다.

제3조 본 공고에 첨부된 목록에 따른 수수료는 5년마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재검토할 수 있다.

2025년 6월 25일 공고

씀싹 텁수틴

보건부 장관

화장품에 관한 학술 자료 평가, 시험·분석, 시설 검사 또는 제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전문가, 전문가 조직,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최대 등록 수수료에 관한
 보건부 공고에 대한 부록
 불기 2568년(서기 2025년)

번호	항목	최대 수수료(바트)	
		전문가	전문가 조직 또는 기관
1	학술 자료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전문가, 전문가 조직,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최대 등록 수수료		
	1.1 등록 신청 또는 그 밖의 관련 신청에 대한 심사	500	5,000
	1.2 전문가 및/또는 조직의 시스템에 대한 역량 평가	2,500	25,000
	1.3 등록 또는 5년 주기의 등록 재검토	5,000	25,000
2	시험·분석, 시설 검사 또는 제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전문가, 전문가 조직,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최대 등록 수수료		
	2.1 등록 신청 또는 그 밖의 관련 신청에 대한 심사	-	1,500
	2.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및/또는 조직의 시스템에 대한 역량 평가	-	3,500
	2.3 전문가 및 전문가 조직의 실제 업무 수행에 대한 현장 평가를 통한 역량 검사	-	85,000
	2.4 등록 또는 5년 주기의 등록 재검토	-	25,000